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제정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목적규정에 둔 약칭을 정비하며,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는 것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양시시보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시보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시보발행규칙”을 “안양시 시보 발행 규칙”으로 한다.

제3조(「안양시기획업무규칙」의 개정) 안양시기획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기획업무규칙”을 “안양시 기획업무 규칙”으로 한다.

제4조(「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회”를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조례”를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6조(「안양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의 개정) 안양시예산성과금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 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으로, “안양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을 “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위원회”을 “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안양시 소비자보호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 소비자보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 소비자보호조례시행규칙”을 “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안양시 소비자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 「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 「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8조(「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를 “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9조(「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 중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을 “바로잡거나 지워 없애거나 바꾸어 쓸”로 한다.

제11조(「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안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안양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 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을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안양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안양시보훈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보훈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보훈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를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조례”를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조례”를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안양시장래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장래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장래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안양시 장래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안양시장래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안양시 장래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조례”를 “「안양시 장래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로 한다.

제3조 중 “조례”를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조례”를 “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그 시행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20조(「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시행규칙”을 “안양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1조(「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시행규칙”을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2조(「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을 “안양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3조(「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안양시 노점상 자녀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학비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4조(「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제25조(「안양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 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 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시행규칙”을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6조(「안양시조경관리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조경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조경관리조례시행규칙”을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수피”를 “나무껍질”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지주목”을 각각 “버팀목”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